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권칠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115 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권칠승·소병훈·박지혜

강선우ㆍ허 영ㆍ이기헌

문금주 • 김준형 • 전용기

김태년 · 김준혁 · 윤종군

위성곤 • 정준호 • 강준혁

임호선 · 오세희 · 염태영

송재봉 • 전현희 • 조인철

김영환 의원(22인)

제안이유

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(IQ)가 71~84 정도의 사람으로서, 학습·취업·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지원이 없음.

반면,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, 그조차도 법적 근거가부재한 관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.

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

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·교육·자립생활·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"경계선지능인"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(안제2조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, 경계선지능인에 대 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하며,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마.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

- 의 결정,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·승인 등에 관한 절차·방법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바.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형사·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(안 제12조).
- 사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을 위해 진단서 비스 홍보,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일정 연령이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- 아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교육·돌봄·자립·취업·평생교육·심리상담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고,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(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).
- 자.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있음(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).
- 차.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, 시·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·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

각각 둠(안 제23조).

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경계선지능인"이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경계선지능인의 권리)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 - ②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에게 법률적·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

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
- ③ 경계선지능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및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인지능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 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고, 국민이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- 제5조(국민의 책무)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

한다.

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
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

- 제7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
 - 2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
 - 3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경계선지능인의 교육·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
 - 5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

-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 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 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그 평가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.
-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 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·

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9조(지원신청 등) ①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(이하 "지원서비스"라 한다)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경계선지능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 호의 보호자(이하 "보호자"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신청으로 본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경계선 지능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 인별 지원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(이하 "개인별지원계획"이라 한다) 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 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.
 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방법・절차 및 제4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

로 정한다.

- 제10조(개인별지원계획 수립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 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(이하 "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"라 한다) 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②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서비스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서비스의 내용,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계선지능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 - ④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자(이하 "지원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하며,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.
 - 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인별지 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제 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경계선지능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

- ⑥ 제5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경계선지능인 또는 그 보호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·수정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·수정하는 경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, 수립 방법 및 내용, 승인통보·신청·변경·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경계선지능인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) ① 지역경계 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계선지능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연계하여 야 한다.
 - ②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·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

제12조(형사・사법 절차상 권리보장) ① 경계선지능인이 재판의 당사

자가 된 경우 그 보호자, 제20조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(이하 "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"라 한다) 의 직원이나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.

- ② 법원은 경계선지능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경계선지능인 본인, 그 보호자, 검사 또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수사기관이 경계선지능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라야 한다.
- 제13조(조기진단의 실시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,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,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·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(이하 "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경계선지 능인 진단검사 결과를 해당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

하며, 지원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로 연계하여야 한다.

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의 실시와 검사결과의 통지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연계 업무를 전문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4조(교육 및 활동·돌봄서비스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·청소년(이하 "경계선지능학생"이라 한다)의 나이, 수학능력(修學能力) 및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 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·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맞춤형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, 제2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·돌봄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한다.

- 제15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형성과 관리지도, 사회성 훈련 및 경제·법률·문화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·관리 지도, 사회성 훈련 및 경제·법률 ·문화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취업 및 고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 리 창출,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이 그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업상담, 직업적성 검사,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. 이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지도 실시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기준에 따라 고용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희망·적성·능력 및 직종 등

- 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구인·구직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꾀하고, 경계선지능인의 취업알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평생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설치,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설치,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18조(심리상담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건 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심리상 담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자녀양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

- 제20조(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할 수 있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

- 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1조(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임무) ①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
 - 2.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·취업·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
 - 3.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·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
 - 4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
 - 5.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
 - 6.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지원
 - 7.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
 - 8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
 - 2.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ㆍ취업ㆍ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
 - 3.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 - 4. 경계선지능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축적

및 관리

- 5.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
- 6.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
- 7.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례관리
- 8. 제12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의 형사·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한 사항
- 9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,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경계선지능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채용할 수 있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 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제23조(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)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

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, 시·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시· 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.

②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시·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.

제5장 보칙 및 벌칙

- 제24조(비밀유지 의무)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5조(지도와 감독)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
- 제26조(보고와 검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 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- 제27조(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22조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제28조(벌칙)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9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30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·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·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